

2024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장

개인적 법익

제1장

개인적 법익

사례
01

사생활 보호 -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 | | | |
|------|--|-----|---------|
| 의결번호 | 제2024-452호 | 언론사 | 국민일보(주)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24년 04월 18일 시사면 「광주 실종 여중생 경기도서 발견… 동행 남성 조사」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미성년자인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실종 신고되었던 중학생이 무사히 귀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일 폐쇄 회로 CCTV에 찍힌 아동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은 실종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실종 아동의 초상을 비식별 처리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실종 당시 수사기관이 수색과 제보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서 학생의 초상을 공표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보도의 시점이 학생 발견 이후였다면, 그 초상 공표로 달성할 수 있었던 공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견 이후에도 초상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해당 학생은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실종 당시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보도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정당성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인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욱 크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종 아동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실종 아동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 례
02

사생활 보호 - 유명인 가족 초상 공개

| | | | |
|------|---|-----|------|
| 의결번호 | 제2024-450호 | 언론사 | 원픽뉴스 |
| 대상보도 | 원픽뉴스 2024년 04월 01일 연예면 「"최근 연애 경험 있어".. 은지원 '재혼' 언급에 전 부인과의 이혼 사유 재조명됐다」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재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전 배우자의 초상이 식별 가능한 결혼사진과 증명사진 그리고 성명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표된 초상 및 성명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재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 배우자는 유명 연예인과 달리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 또한 전 배우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를 고려할 때, 당사자의 초상 및 성명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유명 연예인의 전 배우자의 초상과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였다.

사 례
03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 초상 공개

| | | | |
|------|--|-----|-----------------|
| 의결번호 | 제2024-23호 | 언론사 | (주)코리아엔터테인먼트미디어 |
| 대상보도 | 텐아시아 2023년 12월 04일 연예가화제면 「[전문] 최민환-율희, 결혼 5년만 이혼…」세 아이는 남편이 양육」[TEN이슈]」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부부의 이혼 사실을 보도하면서, 과거 육아 예능프로그램 출연 당시 공식 석상에서 촬영된 가족사진을 사용하였다. 해당 사진에서 미성년 자녀의 초상에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현재의 모습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과거에 공표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초상의 재공표에 대해 자녀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자녀는 연예인 부모와 달리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며, 공적 인물로 보기도 어렵고, 해당 보도의 핵심 내용 또한 자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를 고려할 때, 자녀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에 비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삭제하였다.

사 례
04

사생활 보호 - 내밀 영역 공개

| | | | |
|-------|--|-----|---------|
| 의결번호 | 제2024-877호 | 언론사 | (주)국제뉴스 |
| 대상 보도 | 국제뉴스 2024년 09월 19일 연예면 「나는 솔로' ○○기 ○○, 강제입원설 불거지자 제작진 "확인 불가"」 제하의 기사 | | |
| 침해 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 사항 | 대상 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의혹을 보도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초상과 방송 출연 시기, 방송 출연 당시 사용한 가명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해당 보도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입원 여부 및 정신질환 관련 정보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공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지 방송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인물의 병력 등 구체적인 건강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표되어서는 안 되는 사적 정보로,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05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①

| | | | |
|------|---|-----|------------|
| 의결번호 | 제2024-608호 | 언론사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24년 06월 03일 사회면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 백종원 먹방도 논란」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관련자로 지목된 사인(私人)을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인용하며 해당 인물의 성명을 비식별 처리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해당 인물의 신상정보가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사자가 범죄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작다.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인(私人)의 신상정보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된 사인(私人)의 성명이 공개된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사 례
06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②

| | | | |
|------|--|-----|---------|
| 의결번호 | 제2024-91호 | 언론사 | 투데이 플로우 |
| 대상보도 | 투데이 플로우 2023년 12월 23일 연예면 「물어보살 최장암 4기 故최성희 '상간녀'...84년생 한X주 신상 근황 공개」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된 불륜 사연을 보도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상간녀의 성명, 출생 연도 등 신상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사진과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성명 및 기타 신상정보 일부가 유튜브에 의해 이미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불륜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성명 등을 공표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보도가 세간의 관심을 끈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사인(私人)의 신상정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표는 성명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07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③

| | | | |
|------|--|-----|---------|
| 의결번호 | 제2024-753호 | 언론사 | 파이낸셜투데이 |
| 대상보도 |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2024년 07월 19일 금융면 「[단독]“동일 진단서, 한 보험사만 無지급” 무심코 동의한 ‘의료자문’ 발목」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개인정보가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보험금 지급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보험 가입자의 제보를 보도하면서, 해당 가입자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비식별 처리되지 않은 진단서를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보도에 인용된 진단서가 보험 가입자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성명·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가 비식별 조치된 점을 감안할 때, 연락처의 공표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증 자료로서 진단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무관한 일반 사인(私人)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보험 가입자의 연락처가 공개된 진단서를 삭제하였다.

사 례
08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통신비밀 침해

| | | | |
|------|--|-----|------|
| 의결번호 | 제2024-7호 | 언론사 | 모두서치 |
| 대상보도 | 모두서치 2023년 12월 13일 사회면 「"오빠 궁디 팡팡 해줘요, 먹고 싶다.." 충남 천안 ○○대 40대 교수 20대 제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불륜으로..."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신상,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 통신 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국내 한 대학의 사제 간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학명, 출생 연도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당사자 간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된 사적 통신 내용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통신 내용이 불륜 당사자의 배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로되었고, 이후 해당 교수의 교원 정보가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문제가 된 공표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이 지역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일부 공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당사자의 신상정보 및 내밀한 사적 통신 내용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및 사적 통신 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9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 | | | |
|------|--|-----|------|
| 의결번호 | 제2024-354호 | 언론사 | 뉴스속닥 |
| 대상보도 | 뉴스속닥 2024년 03월 02일 엔터면 「"성인 용품을.." 현봉식 여자친구 인스타, '바람+반려견 유기' 허위사실 유포 연인 고소」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회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2조(명예훼손 금지)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적인 통신 내용이 공표된 부분 및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국내 유명 배우의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배우와 연인 사이로 추정되는 인물 간의 통신 내용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2항 및 제2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명예훼손 금지) ②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해당 통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며, 해당 배우가 폭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고 폭로자를 고소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가 공표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낮다. 비록 통신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직업적 특성상 대중에 미치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문란한 사생활을 암시하는 내용은 사회적 평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설령 이 기사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을 다뤘더라도, 공적 인물도 사생활의 전면적인 포기를 요구받을 수 없으며, 이성 관계에서의 사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통신 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0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 공개 ①

| | | | |
|------|---|-----|------|
| 의결번호 | 제2024-755호 | 언론사 | 민심뉴스 |
| 대상보도 | 민심뉴스 2024년 07월 15일 뉴스면 「양주 태권도장 5세 아동 심정지 사건 도장 어디?... 용의자 CCTV 삭제, 아동학대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양주시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도록 태권도 학원명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권고 이유

사건 이후 해당 학원이 폐업하였더라도, 수년간 공표된 학원명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로 재직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명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불과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나

향후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적 인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도 당시 미결구금 상태여서 형사사법 집행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이 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실명이나 신원 공개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공표된 학원 관련 정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 보도의 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피고인의 학원명을 삭제하였다.

사
례
11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 공개 ②

| | | | |
|------|---|-----|--------------|
| 의결번호 | 제2024-40호 | 언론사 | (주)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대상보도 | 톱스타뉴스(TopStarNews) 2023년 12월 28일 「가세연, 김○○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명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마약 및 협박 의혹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연예인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명을 비식별 조치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마약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형사상 신분은 '피고인'에 불과하며, 유명 유튜브 버의 폭로로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을 공적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해당 보도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공익에 일정 부분 기여하더라도, 사건 경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성명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및 사생활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삭제하였다.

| 시정권고 전 | 시정권고 후 |
|--|--|
| 가세연, 김○○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 가세연, 유형업소 여실장 녹취록 공개→배우 사망..."범죄자일 뿐, 피해자 아냐" |

사 례
1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해자 신원 공개

| | | | |
|------|---|-----|---------|
| 의결번호 | 제2024-520호 | 언론사 | (주)문화일보 |
| 대상보도 | 인터넷 문화일보 2024년 05월 09일 사회면 「부산지법 앞서 50대 유튜버가 흉기 살해」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강력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명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권고 이유

보도에서 공표된 유튜브 채널은 피해자가 초상을 공개하며 직접 운영·출연하는 채널로서, 채널명 공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가해자는 범행 후부터 검거 시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공개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자 특정 및 피해 사실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은 없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명 공개는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관련 조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범죄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 명을 삭제하였다.

사 례
13

성폭력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 상세 묘사

| | | | |
|------|--|-----|------|
| 의결번호 | 제2024-631호 | 언론사 | 살구뉴스 |
| 대상보도 | 살구뉴스 2024년 06월 09일 뉴스면 「밀양 판결문 전문 요약 해보니...엇갈린 가해자· 피해자 근황 오열(+신상 번호)」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 심의 개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 판결문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② 언론은 성폭력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고 이유

성범죄 보도의 특성상 범죄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묘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동작, 피해자의 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도는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저해하고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하고 선정적인 묘사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
례
14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 | | | |
|------|--|-----|-------------|
| 의결번호 | 제2024-636호 | 언론사 | (주)디스패치뉴스그룹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24년 06월 02일 핫이슈면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kg 계모 위에서 뛰었다」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 피해자의 피해 상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① 심의 개요

2020년 천안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반복적인 학대 수법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피해 아동의 신체적 피해 상태를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권고 이유

아동학대 보도의 특성상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학대 행위 묘사가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려는 목적을 넘어서, 구체적인 학대 수단과 방법,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피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과도한 묘사는 피해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
례
15

신고자등 보호 - 특정 범죄 신고자 신원 공개

| | | | |
|------|--|-----|---------|
| 의결번호 | 제2024-779호 | 언론사 | (주)연합뉴스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24년 07월 29일 최신기사면 「채팅하다 알게 된 초등학생 집에 찾아가 성폭행...20대 2명 입건」 제하의 기사 | | |
| 침해유형 |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신고자등 보호) | | |
| 권고사항 | 대상보도 중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 |

심의 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최초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직업, 관계 등)를 기사 내용에 포함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 권고 이유

관련 보도 및 후속 보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고 사실의 공표에 대해 신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해당 보도에서 성명이나 소속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보건교사가 학교 내 소수에 해당하고, 피의자들이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신고자의 소속 학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형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고자에 대한 보복 위험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의 공표는 신고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 권고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언론사는 기사에서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